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2월 9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2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2.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및 제7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6조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1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시 준수사항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당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
----------	-----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발 의 자 : 이순우, 000(0인)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및 제7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조
항 신설 (안 제8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2. 3. ~ 2023. 2. 8.):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

· 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실행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조화·균형·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5.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관리
6.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공공시설물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시행하는 별표 1의 심의대상 중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 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별표 1의 심의 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관계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다. 도시계획, 건축, 조경, 토목, 구조, 교통, 인문·사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

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미만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제17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서면심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심의결과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제24조(심의신청 시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절차)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이는 두 차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11조 관련)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설물의 종류
<p>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p>	<p>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p>
<p>도시 철도 시설</p>	<p>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p>
<p>하천 시설물</p>	<p>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p>
<p>전원설비</p>	<p>가. 송전탑, 변압탑</p>
<p>자전거 이용시설</p>	<p>가. 자전거보관대 등</p>

2. 그 밖의 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